2022년 제1차 청렴옴부즈만 회의결과

<UNIST 감사실, 22.4.25.>

□ 회의개요

○ 일 시 : 2022. 4. 21.(목), 18:30 ~ 20:30

○ 장 소 : UNIST 및 인근식당

○ 참석자 : 총 6명

- (청렴 옴부즈만) 하선규 위원, 신면주 위원, 윤영선 위원
- (울산과학기술원) 김혜경 상임감사, 오승록 감사실장, 한재원 감사실원

○ 회의일정

시 간		주 요 내 용
18:10~18:30	20′	- 접견
18:30~18:35	5′	- 상임감사님 인사말씀
18:35~19:20	45′	**- 청렴 옴부즈만 안건보고 및 논의** ○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대비 주요내용 공유 ○ 향후 회의 일정 및 기타 논의사항
19:20~20:30	70′	- 식사 및 회의 안건 논의(계속)

□ 회의안건

안건 명	안건 주요내용(요약)
<1호 안건>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대비 주요내용 공유	○ 안건설명 -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사건이 지속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통제장치인 <u>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 시행</u> -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**10대 행위기준**을 두어 <u>5가지의 신고·제출 의무와 5가지의 제한·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</u>

	- UNIST 임직원 행동강령과 직원 복무관리 지침에 이해충돌관련 조항이 있으나 법 시행에 앞서 안정적인 시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고양식 및 처리절차를 보완하고자 함
<옴부즈만 의견>	○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옴부즈만 의견 - 시민들이 공직자 청렴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경향에 따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음 - 고위공직자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법의 취지를 이해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- 관련 규정 제정과 더불어 신고양식과 신고자 보호 근거를 마련하여 법의 시행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작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노력해주기를 바람

2022년 제2차 청렴옴부즈만 회의결과

<UNIST 감사실, 22.7.15.>

□ 회의개요

○ 일 시 : 2022. 7. 14.(목), 18:30 ~ 20:30

○ 장 소 : UNIST 및 인근식당

○ 참석자 : 총 6명

- (청렴 옴부즈만) 하선규 위원, 신면주 위원, 윤영선 위원
- (울산과학기술원) 김혜경 상임감사, 오승록 감사실장, 한재원 감사실원

□ 회의안건

안건 명	안건 주요내용(요약)
<1호 안건> 부패행위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방안	○ 안건설명 - 관련 법령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, 불이익조치 금지, 신변보호 조치 등의 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- 부패행위신고자 보호를 강화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2022년 7월 5일 시행되었음 - 울산과학기술원은 「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」을 근거로 부패행위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중임
<옴부즈만 의견>	○ 옴부즈만 의견 -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부패·공익 신고자들에게 지급한 보상·포상금이 241억여원에 이르며, 이로 인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17억여원에 이른다고 함

	- 울산과학기술원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여, **신고자 보호제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**
<청렴 옴부즈만 제도개선 권고>	○ **제도개선 권고: 부패행위 신고자보호제도 관련규정 개선** - 최근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부패 신고자의 내부 **징계처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 범위가 확대됨** - 옴부즈만의 울산과학기술원 관련 규정 검토 결과 「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」에 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는 등 **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하여 내부 지침 개정 추진을 권고 함**

□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14조(책임의 감면 등) ①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	제14조(책임의 감면 등) ① 기관장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 (신설 2022.00.00)
<신 설>	② 기관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 (신설 2022.00.00)
② 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,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.	③ 현행 제 2항과 같음
<신 설>	부칙(2022.00.00.)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2022년 제3차 청렴옴부즈만 회의결과

<UNIST 감사실, 22.10.31.>

□ 회의개요

○ 일 시 : 2022. 10. 28.(금), 16:00 ~ 18:30

○ 장 소 : UNIST 및 인근식당

○ 참석자 : 총 6명

- (청렴 옴부즈만) 하선규 위원, 신면주 위원, 윤영선 위원
- (울산과학기술원) 김혜경 상임감사, 권용태 감사실장, 한재원 감사실원

□ 회의안건

안건 명	안건 주요내용(요약)
<1호 안건> 청렴 옴부즈만 제도개선 권고사항 결과보고	○ 안건설명 - 지난 7월 5일 개정된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에 따라 부패신고자의 징계처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 범위가 확대됨 - 2022년 제2차 청렴옴부즈만 회의 결과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울산과학기술원「부패행위 신고 접수·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」에 책임감면 범위를 확대하도록 지침 개정 요청 (7월 25일 지침개정 완료)
<옴부즈만 의견>	○ 옴부즈만 의견 - 부패신고자가 <u>안심하고 신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지름길임</u> - 부패신고자의 책임감면 외에도 비밀보장, 구조금 지급 등 <u>신고자 보호·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공익 신고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부서의 역할이 중요</u>함

<2호 안건> 자체감사활동 심사제도 개선 방안 논의	○ 안건설명 - 감사원 주관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적용기관의 자체감사 개선과 발전을 유도하고 감사역량을 제고하고자 2011년부터 자체감사활동 심사 중 - 기존 심사제도는 자체감사기구 활동에만 중점을 두어 기관 전반적으로 내부 통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내년('23)부터 감사원이 자체감사활동 분야의 비중을 축소하고 기관 차원의 내부통제 지원분야 항목을 신설하여 심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
<옴부즈만 의견>	○ 옴부즈만 의견 - 기관 반부패·청렴문화 확산은 감사부서만의 업무가 아닌 <u>최고 관리자를 비롯하여 기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임</u> - 개선된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제도에 맞춰 전년도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울산과학기술원 <u>취약분야(감사 인프라, 감사성과)를 개선하고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심사지표 관리에 힘쓰기를 바람</u>